|  |  |  |
| --- | --- | --- |
| **권장류 외상투자기업 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 취소 후의 후속업무 수행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2015]160號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  2014년 7월 22일 국무원은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권장류 외상투자기업 프로젝트 확인 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였음. 국무원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역주: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관리권한을 기업에게 이양.)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의 수입설비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상무주관부서는 더이상 <국가에서 발전을 격려하는 내외자 프로젝트 확인서>(이하 '<확인서>'로 약칭)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외상투자기업(이하 '기업'으로 약칭)의 면세수입설비 리스트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2015년 5월 1일부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규정 및 권한에 따라 기업 설립(증자)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권장류 산업과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상의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는 산업정책, 프로젝트 성격,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포함한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이하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로 약칭)를 기업 설립(증자) 비준문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2개 이상의 권장류 산업정책과 연관된 경우 관련 정책 별로 상기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상무주관부서는 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정보를 외상투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으로 약칭)에 입력해야 한다.  성급 이하 상무주관부서는 상기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업비준증서와 함께 시스템을 통해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업로드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대조 실시 후 3일(근무일 기준) 내에 시스템을 통해 대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성급 이하 상무주관부서는 결과를 피드백 받은 후 비준문건 및 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상무주관부서가 2014년 7월 22일 이전에 비준하였으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기업 설립(증자) 사항과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4월 30일 사이에 비준한 기업 설립(증자) 사항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권장류 산업과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상의 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 취합표>(이하 '<취합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성급 이하 상무주관부서는 2015년 6월 1일 전에 <취합표>를 소속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대조토록 해야 하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범위 내의 대조 및 취합 완료한 <취합표>를 관련 직속 해관으로 발송하고 상무부(외자사)에 참조로 발송해야 한다.  4. 이 통지 제1조에 규정한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변경을 비준한 후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대조 후 변경된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관련 직속 해관으로 발송한다.  5.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증자)가 비안(備案) 절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비안(備案)을 실시한 부서가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비안(備案)증명서 비고란에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기재한다.  6. 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성급 상무주관부서 및 직속 해관과 소통, 조율하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상무부(외자사), 해관총서(관세사)에 반영한다.  첨부: 권장류 외상투자 프로젝트 정보 취합표(생략)  상무부  2015년 4월 13일 |  | **商务部**  **关于做好取消鼓励类外商投资企业项目确认审批后续工作的通知**  商资函[2015]16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  　　2014年7月22日，国务院印发《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4﹞27号），取消“鼓励类外商投资企业项目确认审批”事项。为贯彻落实国务院简政放权的有关要求，继续有效实施《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进口设备税收政策，现就有关工作通知如下：  　　一、对外商投资鼓励类项目，商务主管部门不再出具《国家鼓励发展的内外资项目确认书》（以下简称《确认书》），不再审核外商投资企业（以下简称企业）免税进口设备清单。  　　自2015年5月1日起，商务主管部门在按有关规定和权限办理企业设立（增资）事项时，对符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鼓励类产业条目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条目的外商投资，应当在企业设立（增资）的批复中明确与外商投资鼓励类项目有关的信息（以下称外商投资鼓励类项目信息），包括：适用产业政策条目、项目性质、项目内容、项目投资总额。企业投资经营活动涉及多项鼓励类产业政策条目的，应当按照相关条目分别明确上述信息。  　　二、商务主管部门应当于发放企业批准证书之前，将本文第一条规定的信息录入全口径外商投资管理信息系统（以下简称系统）。  　　省级以下商务主管部门将上述信息录入系统后，应将其与企业批准证书信息一并通过系统上传至省级商务主管部门。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进行比对，并在3个工作日内通过系统反馈比对结果。省级以下商务主管部门收到反馈结果后，方可出具批复文件和企业批准证书。  　　三、商务主管部门在2014年7月22日前批复的企业设立（增资）但未出具《确认书》，以及2014年7月22日至2015年4月30日期间批复的企业设立（增资）事项，对于其中符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鼓励类产业条目和《中西部地区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条目的，应当填写《外商投资鼓励类项目信息汇总表》（以下简称《汇总表》，格式见附表）。  　　省级以下商务主管部门应于2015年6月1日前将《汇总表》报所属省级商务主管部门比对汇总，省级商务主管部门应于2015年7月1日前，将所辖范围内比对汇总完毕的《汇总表》发送相关直属海关，抄送商务部（外资司）。  　　四、本通知第一条规定的外商投资鼓励类项目信息发生变化的，商务主管部门应当在批准变更后及时将变化后的信息录入系统，由省级商务主管部门比对后向相关直属海关发送外商投资鼓励类项目变更后信息。  五、如外商投资企业设立（增资）适用备案程序，由实施备案的部门参照上述规定执行，并在出具的备案证明备注栏中注明外商投资鼓励类项目信息。  　　六、本通知自发布之日起执行。对于执行中遇到的问题，请省级商务主管部门与直属海关加强沟通、协调，必要时向商务部（外资司）、海关总署（关税司）反映。  　　附表：外商投资鼓励类项目信息汇总表(略)  商务部  2015年4月13日 |